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마을어업수산물 피해지원 근거 마련〉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44·2212145호)

202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
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3
III . 검토의견	
1.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마을어업 수산물 포함	4
2.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포함	11
[참고자료]	17

I . 제안경위

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144호)

가.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나. 제안일: 2025. 8. 12.

다. 회부일: 2025. 8. 13.

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145호)

가.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나. 제안일: 2025. 8. 12.

다. 회부일: 2025.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144호)

마을어업은 우리 어촌공동체를 지탱해 온 기초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해 왔음. 최근 고수온 현상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마을어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어가 생계를 위협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을 부채질함.

마을어업은 전체 어업생산액의 2%에 불과하지만 다수 어민들이 참여하기에 여전히 어촌계를 유지하는 생산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음.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마을어업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상기후에 따른 마을어업수산물의 생산 감소의 피해를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재해보험의 범위와 대상에 양식수산물과 함께 마을어업수산물을 추가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마을어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145호)

이상기후로 인해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도 바지락 생산량은 최근 3개년 평균 1,000톤 수준으로 격감함.

서해안 조개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바지락은 어촌의 대표적인 소득원임. 어촌의 주된 소득자원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과 함께 공동체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

경기도와 전라북도 등은 이에 따라 바지락을 재해보험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하고 있음. 이럼에도 바지락은 마을어업 수산물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고수온 피해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양식물에 대한 재해에 대해서 보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으나, 마을어업 수산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Ⅲ. 검토의견

1.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마을어업 수산물 포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144호)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마을어업 수산물 및 그 시설물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조).

【 개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양식수산물, 마을어업수산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1. -----양식수산물, 마을어업수산물 및-----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2. ~ 6. (생략)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u>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u>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u>양식수산물재해보험</u>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제5조(보험목적물) ①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u>양식수산업</u>에 종사하는 <u>개인 또는 법인</u>	----- -----. 2. ~ 6. (현행과 같음)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 ----- -----<u>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마을어업수산물재해보험</u>----- ----- -----<u>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마을어업수산물재해보험</u>----- -----. 제5조(보험목적물) ①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마을어업수산물재해보험: 마을어업수산물 및 마을어업시설물</u>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험가입자) ----- -----<u>양식수산업 또는 마을어업</u>-----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
<신설>	1. 개인
<신설>	2. 법인
<신설>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 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해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임산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4종류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음(§4).

이 중 해양수산부 소관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양식수산물 또는 양식시설물을 보험목적물로 하고(§5), 보험가입자는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되며(§7), 수협중앙회가 보험사업자로서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음(§8·10·11).¹⁾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재해 피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8년 도입되었으며,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로 총 30개 어종(품목)을

1)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운영체계는 [참고 1] 참조

대상으로,²⁾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등의 재해³⁾에 따른 피해에 대해 수산물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산지가격의 85-90% 수준으로, 시설물의 경우 원상복구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음.⁴⁾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순보험료의 50%와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전액을 보조하고 있으며, 매년 약 25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⁵⁾

□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에 주는 면허로, 해안에 연접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함.⁶⁾

2024년 기준 마을어업 면허는 총 3,500건으로 전체 면허어업권 1만

2)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농어, 기타볼락, 송어, 우렁챙이, 뱀장어, 미역,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송어, 가리비,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3) 보상재해는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음과 같음.

- (주계약)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가뭄, 이상수온·수질, 저수온 등
- (특약) 전기장치위험, 이상수온·수질, 고·저수온, 조수, 양식시설물, 팽생이모자반, 유빙 등

4) 최근 5개년간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현황과 연도별 사고 원인별 보험금 지급 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5) 최근연도 예산 규모는 2022년 253억원, 2023년 230억원, 2024년 241억원, 2025년 250억원임.

6) 「수산업법」 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4,039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⁷⁾ 2022년 기준 마을어업 면허권 총 13만 1,710ha의 면적에서 생산된 수산물 생산금액은 약 1,900억원(생산량은 약 6만톤)으로, 이는 2021년 우리나라 수산업 생산액 9.3조원의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임.⁸⁾

【 마을어업의 법적 지위 】

구 분	주요 내용	근거 조문
정의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생물을 관리 및 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수산업법」 제7조
면허대상 (어업권자)	어촌계 및 지구별 수협	법 제8조
어업권 행사요건	어촌계 계원 어촌계원이 아닌 경우 해당 어촌계가 속한 지역을 주소지로 하거나, 어촌계 총회의 의결 또는 해당 지역에 어업신고를 마친 경우	법 제36조
범위 (수심)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 수심 5미터 이내 (경북, 강원도 및 제주도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	령 제7조
어법	낚·호미·칼·팽이 또는 삽 해조틀이 또는 갈퀴류 통발 또는 문어단지 추진 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등	규칙 제11조
보호구역	어장간 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보호구역 설정 가능	규칙 별표5
면허결격 사유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단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형 확정·집행 후 2년 이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2년 이내	법 제9조
벌칙	무면허 어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면허발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보호구역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06조 ~제112조

자료: 마창모·안지은·최순, 『마을어장 이용·관리 개선방안 연구』, 2024.1.

7) 2024년도 면허 어업은 마을어업 3,500건 외 정치망 476건, 천해양식 1만 63건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정책통계』, 2025.8.

8) 마창모·안지은·최순, 『마을어장 이용·관리 개선방안 연구』, 2024.1.

□ 마을어업의 절대적인 생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국에서 약 50여 종의 수산물이 생산되어 국민 먹거리의 다양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⁹⁾

아울러 마을어장은 공동으로 면허권을 이용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공동체의 생산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서 지역 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됨.¹⁰⁾

□ 개정안은 현재 양식수산물에 한정되어 있는 어업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을 마을어업 수산물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마을어업은 공동 면허를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수산물 피해나 시설물 파손이 발생하면 마을 전체 어가의 생계와 수산물 유통망에 위험이 발생하고,

또한 수산물은 고수온·적조·태풍 등 재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으며, 특히 마을어업은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어장이 한정적이어서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이 더 크다는 점¹¹⁾ 등을 고려할 때

마을어업 수산물과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어업경영의 안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9) 생선품종(생산량순)은 바지락, 미역류, 소라, 동죽, 기태 패류, 성게류, 파래류, 맛류, 해삼, 새꼬막, 고동류, 우렁쉥이, 우뚝가사리, 가무락, 김류, 홍합류, 개조개, 낙지류, 피조개, 톳, 기타 수산동물류, 기타 해조류, 기타 연체동물류, 문어류, 백합류, 전복류, 기타 게류, 민꽃게, 청각, 꼬막, 키조개, 모자반(말)류, 도박류, 가리비류, 모자반(물), 개량조개류, 오분자기, 꼬시래기류, 새조개, 쭈꾸미, 기타 어류, 기타 갑각류, 갑오징어류, 돌돔, 매생이, 오만둥이, 기타 새우류 등임. 마창모·안지은·최순, 『마을어장 이용·관리 개선방안 연구』, 2024.1.

10) 마창모·안지은·최순, 『마을어장 이용·관리 개선방안 연구』, 2024.1.

11) 김봉태, 「연안어업의 기후변화 피해비용 분석: SSP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해양정책연구』 제38권 제1호, 2023. 5.

- 다만, 마을어업 수산물의 개념이나 범위가 보험목적물로서 확정하기에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그 중 일부가 현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수산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7조는 기존의 보험가입자(개인, 법인)에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을 추가하고 있는데, 지구별수협은 법인으로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어촌계는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의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에 규정할 필요도 있어 보임.
-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업 면허자도 양식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며, 대표적 마을어업 양식수산물인 바지락 등에 대해서는 보험상품화 연구를 통해 보험 대상 품목으로의 확대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임.

2.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포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2144호)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마을어업 수산물의 피해를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조).

【 개정안 조문 대비표 】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 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제5조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u>피해</u> 를 말한다.	3. ----- ----- ----- ----- ----- ----- ----- ----- ----- ----- ----- <u>피해와 마을어업수산물의</u> <u>피해</u> -----.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9. ----- ----- ----- ----- ----- ----- -----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영어조합법인 및 <u>어업회사법인</u>을 말한다. 10. ~ 13. (생략) <u><신설></u>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u><신설></u> 2. ~ 4. (생략) ④ ~ ⑧ (생략)	-----<u>어업회사법인</u>,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촌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10. ~ 13. (현행과 같음) 14. “<u>마을어업수산물</u>”이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채취되는 패류·해조류 및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u>어업재해로 인한 마을어업수산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u> 가. <u>수산종자대금</u> 나. <u>어장 내 폐사된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u>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 재해 예방 및 그 사후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1).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복구와 재해를 입은 농어가 지원을 포함한 재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3),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피해 농어를 지원해야 하며(§4), 재해를 입은 농어의 생계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세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4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어가에 대한 지원 범위는 ①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수산종자대금과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②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③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이재민 구호,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수산업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감면, 정부양곡 지급 등, ④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¹²⁾ 지원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4③).
-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로서,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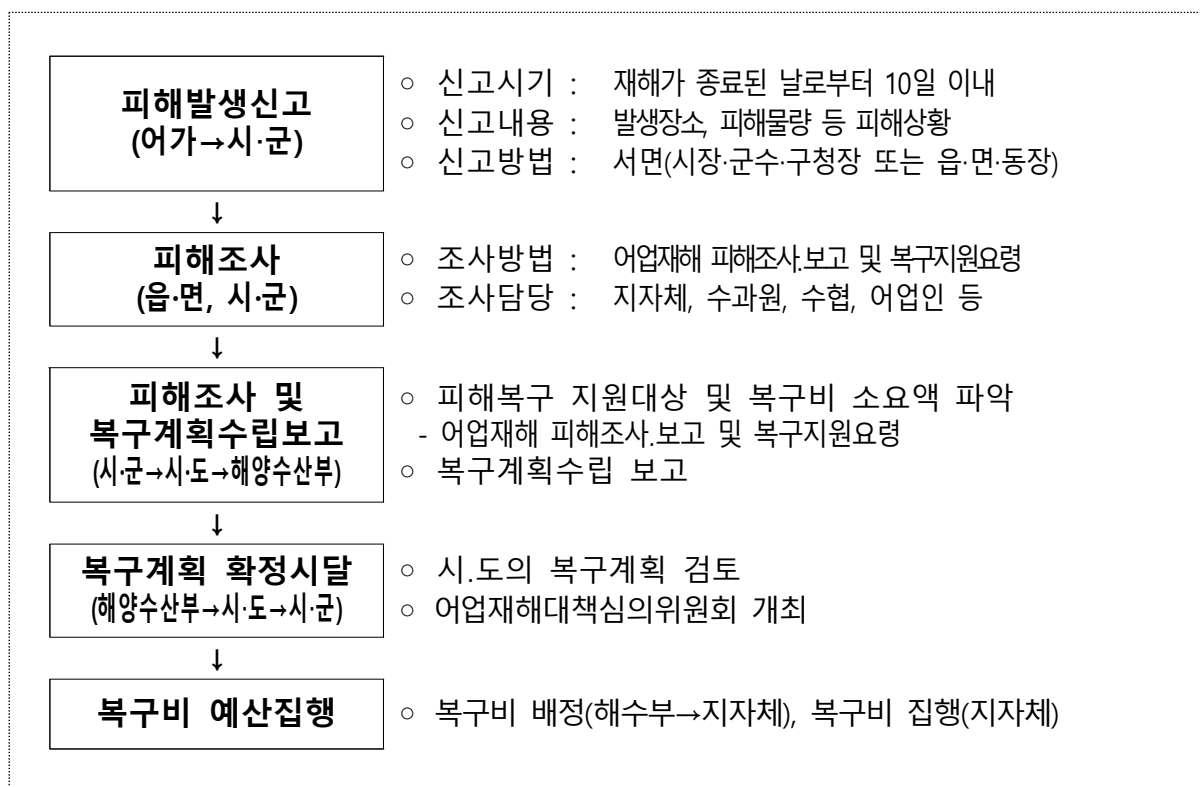
12) 입식비는 양식어가가 치어·종묘를 사들여 양식장에 입식할 때 들어가는 초기비용 의미

13)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1967년부터 농어업재해로 인해 주요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영농·영어를 재개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가 경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지원하고, 어항시설 등 어업기반시설 피해를 복구하며, 유해생물(적조) 구제를 위해 장비(황토·철망) 및 시설(선박·차량 등) 대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¹⁴⁾

【 피해복구비 지원 절차 】



자료: 해양수산부

「재난안전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4) 해양수산부는 “양식등 재해대책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최근연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79억 7,300만원, 2023년 169억 900만원, 2024년 192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7월말 현재 예산현액 443억 1,400만원 중 278억 9,000만원을 집행(62.9%)함.

- 개정안은 현재 양식수산물에 한정되어 있는 어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대상을 마을어업 수산물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마을어업이 생산·생활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 마을 전체 어가의 생계와 수산물 유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업의 영세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마을어업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마을어업 수산물의 개념이나 범위가 지원대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생산 방식에 따라 현행 양식수산물과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그 중 일부가 현행법상 지원 대상 수산물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 피해복구 지원이 가능한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① 피해 물량과 ②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마을어업의 경우 폐사한 종패가 어업인이 살포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어장에 존재하던 것인지를 식별하기 어렵고,¹⁵⁾ 재해

15) 마을어장에 있는 패류 등이 어업인 소유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함.

①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기 전에도 이미 자연산 바지락이 생존하고 있었을 것인데, 소유권이 나 점유권을 당연히 취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수량조차 확정되지 않아 살포한 종패에 관해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을 기각한 사례(2006다 75788),

② “어업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양식장에서 모시조개를 채취한 경우 절도죄(손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시조개가 자연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로부

와 피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조사 방법도 미비한바,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조사 방법을 정립한 이후에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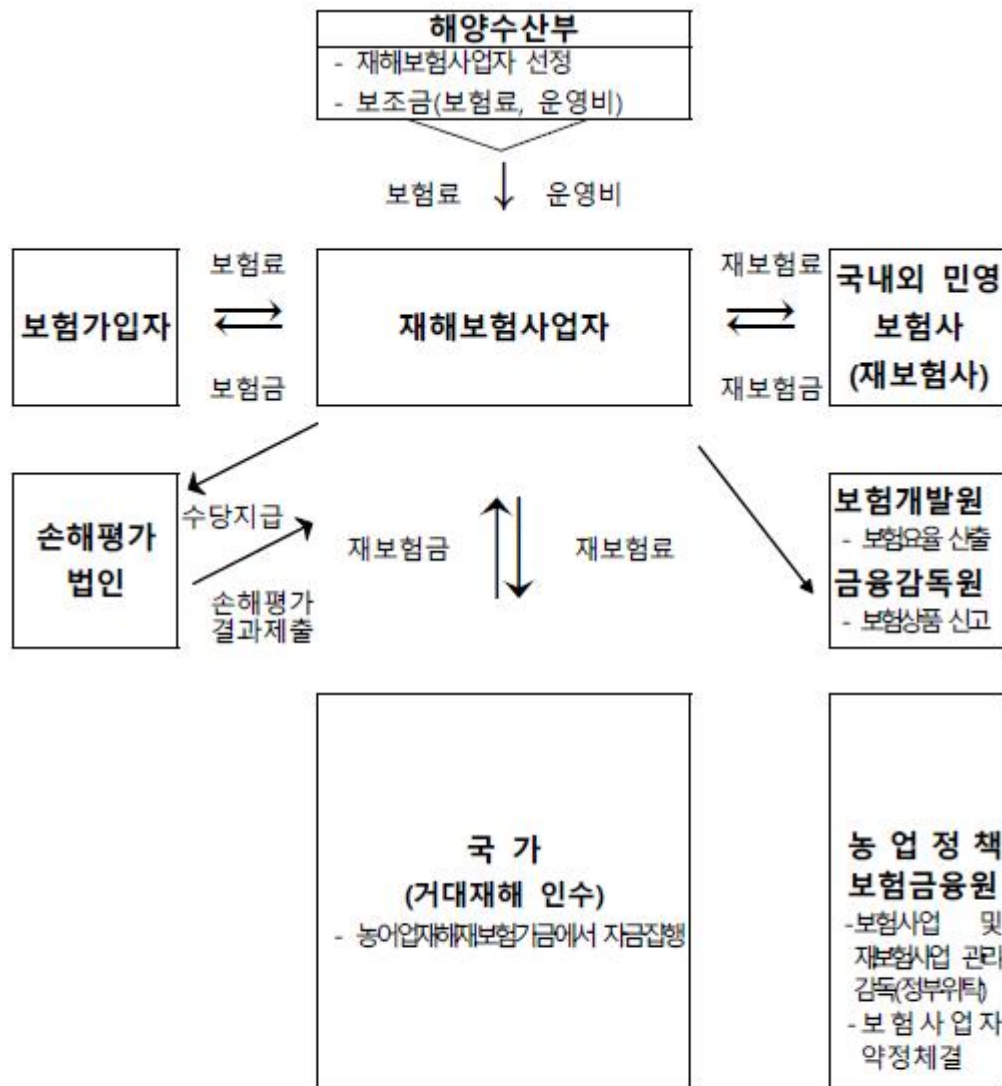
- 법제 측면에서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나, 해당 조문들은 최근 개정되어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본 개정안은 시행 전 법률 개정의 형식으로 수정이 필요함.

문 의 처
02) 6788-5422

터 모시조개가 자연적으로 많이 서식하는 지역인 점과 조수간만에 의해 모시조개의 유출입이 반복되는 점, 모시조개가 살포된 모시조개인지 여부의 증명이 없다”는 등 이유로 절도로 볼 수 없다는 사례(2009도11827) 등이 있음.

참고 1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운영체계



손해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위험분산체계('22)		손실 범위
140%초과	국가재보험(국가 100%부담)		
0%	보험사업자(15%부담)	재보험사(85%부담)	이익 범위 100%

* 손해율: 보험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에서 자연재해 피해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참고 2

‘20년 ~ ‘24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 현황

(단위 : 어가,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합 계		9,586	2,682	28.0	7,378	2,194	29.7	7,378	2,733	37.0	7,378	2,936	39.8	7,378	2,926	39.7
소 계		3,595	1,225	34.1	2,561	1,109	43.3	2,561	1,241	48.5	2,561	1,497	58.5	2,561	1,565	61.1
고수온 취약품목	넙치	513	340	66.3	490	346	70.6	490	341	69.6	490	361	73.7	490	361	73.7
	전복	1,943	712	36.6	1,362	594	43.6	1,362	710	52.1	1,362	905	66.4	1,362	964	70.8
	조피볼락	820	113	13.8	424	104	24.5	424	110	25.9	424	134	31.6	424	143	33.7
	강도다리	78	46	59.0	94	62	66.0	94	65	69.1	94	83	88.3	94	91	96.8
	멍게	241	14	5.8	191	3	1.6	191	15	7.9	191	14	7.3	191	6	3.1
소 계		5,591	1,457	24.3	4,817	1,085	22.5	4,817	1,492	31.0	4,817	1,439	29.9	4,817	1,361	28.3
기타 품목	참돔	461	113	24.5	318	83	26.1	318	71	22.3	318	64	20.1	318	64	20.1
	돌돔	164	14	8.5	101	12	11.9	101	14	13.9	101	11	10.9	101	15	14.9
	감성돔	274	30	10.9	188	20	10.6	188	24	12.8	188	21	11.2	188	11	5.9
	농어	237	24	10.1	103	22	21.4	103	13	12.6	103	17	16.5	103	9	8.7
	쥐치	77	7	9.1	88	6	6.8	88	3	3.4	88	7	8.0	88	4	4.5
	볼락	135	2	1.5	76	-	-	76	1	1.3	76	5	6.6	76	4	5.3
	송어	101	82	81.2	116	61	52.6	116	64	55.2	116	65	56.0	116	72	62.1
	능성어	82	4	4.9	35	7	20.0	35	9	25.7	35	17	48.6	35	14	40.0
	김	1,019	2	0.2	1,256	5	0.4	1,256	160	12.7	1,256	53	4.2	1,256	48	3.8
	굴	1,386	645	46.5	834	561	67.3	834	596	71.5	834	621	74.5	834	539	64.6
	뽕장어	119	1	0.8	124	12	9.7	124	15	12.1	124	18	14.5	124	27	21.8
	미역	170	6	3.5	158	-	-	158	1	0.6	158	3	1.9	158	1	0.6
	홍합	376	91	24.2	279	74	26.5	279	87	31.2	279	70	25.1	279	64	22.9
	다시마	639	417	65.3	431	198	45.9	431	322	74.7	431	359	83.3	431	357	82.8
	송어	58	6	10.3	41	6	14.6	41	19	46.3	41	16	39.0	41	14	34.1
	가리비	82	6	7.3	170	9	5.3	170	20	11.8	170	18	10.6	170	28	16.5
	툰	268	-	-	132	-	-	132	-	-	132	-	-	132	1	0.8
	미더덕	100	-	-	110	-	-	110	-	-	110	-	-	110	-	-
	오만둥이	100	-	-	110	-	-	110	-	-	110	-	-	110	-	-
	터봇	20	6	30.0	11	7	63.6	11	6	54.5	11	7	63.6	11	13	118.2
	메기	95	1	1.1	34	2	5.9	34	2	5.9	34	6	17.6	34	4	11.8
	향어	28	-	-	22	-	-	22	-	-	22	-	-	22	-	-
	전복종자	-	-	-	80	-	-	80	65	81.3	80	61	76.3	80	72	90.0

참고 3

연도별 사고 원인별 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 어가, 백만원, %)

연도	가입 어가	위험 보험료 (A)	지급 어가	보험금										손해율 (B/A)	
				합계 (B)	적조	태풍	강풍	고수온	저수온	이상 조류*	질병	풍랑	기타		
‘08	34	126	—	—	—	—	—	—	—	—	—	—	—	—	
‘09	88	461	1	32	—	—	32	—	—	—	—	—	—	6.9	
‘10	181	796	8	246	—	173	—	—	—	—	—	—	73	30.9	
‘11	396	1,445	81	2,735	—	2,185	548	—	—	—	2	—	—	189.3	
‘12	836	3,306	384	36,383	35	35,656	692	—	—	—	—	—	—	1,100.5	
‘13	2,032	9,704	276	20,916	8,434	10,485	83	—	—	42	309	—	1,563	215.5	
‘14	2,770	16,689	178	17,909	8,230	4,026	597	—	—	405	3,067	11	1,573	107.3	
‘15	3,279	20,877	148	14,074	6,061	940	893	—	—	1,574	3,077	1,305	224	67.4	
‘16	3,570	24,169	751	66,367	38,198	13,862	3,201	2,269	492	522	3,922	2,409	1,492	274.6	
‘17	4,037	33,508	875	67,226	948	37,849	584	9,189	1,483	32	9,609	7,198	334	200.6	
‘18	4,250	41,152	1,275	75,775	202	22,664	899	19,102	7,486	1,646	16,456	4,942	2,378	184.1	
‘19	3,744	32,235	2,617	123,774	2,522	87,616	3,660	12,773	—	322	6,553	4,823	5,505	384.0	
‘20	2,682	24,057	806	33,195	741	22,248	2,898	152	—	1,142	4,823	590	601	138.0	
‘21	2,194	19,596	238	10,762	—	5,400	172	3,941	805	176	—	78	190	54.9	
‘22	2,733	23,686	377	9,564	—	5,842	207	1,171	91	869	—	1,072	312	40.4	
‘23	2,936	28,472	238	10,558	—	2,198	37	6,459	463	452	—	229	720	37.1	
‘24	합계 (a)	2,926	28,171	602	57,517	—	207	309	54,171	151	988	—	688	1,003	204.2
	지급액 (b)			289	31,368*	—	107	230	29,502	151	150	—	306	922	111.3
	지급 준비금**			313	26,149	—	100	79	24,669	—	838	—	382	81	92.8

* 이상조류 중 고수온, 저수온을 제외한 이상수온, 이상수질 지급액

** '24년 지급 보험금(31,368백만원) 중 '23년 이전 계약건(8,897백만원)

： 고수온 8,211백만원, 저수온 151백만원, 태풍 107백만원, 강풍 230백만원, 대설 55백만원, 조수 1백만원, 풍랑 105백만원, 호우 37백만원

*** 지급준비금은 소송준비금(3,038백만원)이 제외된 금액임